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기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학교 급식실 등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나 영양사, 조리  
종사원 등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걱정 환기 시설 구축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